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37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1.

발 의 자 : 김영진 · 장종태 · 윤후덕
한창민 · 안태준 · 강득구
서삼석 · 박지원 · 윤종균
차지호 · 이정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삭제·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‘지체 없이’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이행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별로 조치 시점이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.

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‘48시간 이내’에 하도록 그 이행 시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삭제 조치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권리 침해에

대한 피해자 보호를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의2제 2항).

법률 제 호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2제2항 전단 중 “지체 없이”를 “48시간 이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의2(정보의 삭제요청 등)	제44조의2(정보의 삭제요청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	② -----
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	-----
제등을 요청받으면 <u>지체 없이</u>	-----48시간 이내-
삭제 ·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	-----
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	-----
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.	-----.
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	-----
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	-----
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	-----
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	-----
록 하여야 한다.	-----.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